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보조금에 대한 국가보조 의무 신설〉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11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인구감소지역 보조금에 대한 국가보조 의무 신설(안 제53조제2항 신설) ...	2
IV. 입법의 재정영향	9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광규택의원 등 15인

나. 제 출 일 : 2026. 7. 30.

다. 회 부 일 : 2026.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 보조금에 대한 국가보조 의무 신설(안 제5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 재정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 - <신설>	○ 재정지원 - (현행과 같음) - <u>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운영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이 곤란하여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u>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현저히 미달하여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을 재정지원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¹⁾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운영 수입 부족으로 시설 운영이 곤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음.²⁾

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2026년 6월 기준)]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지역의 노동력과 소비가 위축되고, 지방세 세원이 부족하여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반면³⁾,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의료·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인구와 시설 이용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사용료

3)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89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0%로 비인구감소지역(137개)의 29.3%보다 낮음. 해당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세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함.(국회연구조정협의회,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2025. 12.), p.54)

수입만으로 시설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부족한 운영 수입을 사용료 인상으로 보전할 경우 주민의 이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사용료 유지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유지하면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조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소득·재정상태, 지리적 여건, 고용 감소 및 주된 산업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중에도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국가보조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타 취약지역 유형 예시]

구분	근거법령	지정기준
성장촉진 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인구·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
특수상황 지역		남북 분단이나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접경지역, 개발대상섬, 새만금사업지역 등
고용위기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특별 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시설의 파급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건설단계에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며,

운영단계 지원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관련 지원이 폐지·축소되어 왔다는 입장임.⁴⁾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에 국고를 지원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다른 지역의 지원 확대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예를 들어, 최소수입보장사업(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은 2009년 폐지되었으며, 최소비용보전사업(MCC: Minimum Cost Compensation)은 2025년 말 기준 17개 사업만 진행 중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재정지원) (생략)	제53조(재정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운영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이 곤란하여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시설 중 사용료의 적정수준 유지 또는 시설 운용 유지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시설, 해당 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규모 및 국가 보조 비율은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는 경우로 보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⁵⁾

문 의 처
02)6788-5153

5) 국회예산정책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6.8.21.